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하여 성주군 조례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 각 부서별 개별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인용조문 등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14조)

· 대상 :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14개 조례

· 내용 : 상위법 개정·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상위법 제명 변경 사항 정비

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안 제15조～제28조)

· 대상 : 성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등 14개 조례

· 내용 : 일본식 한자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한자어 정비

정비대상 한 자 어	회무	통찰	지참	납골당	구좌	부락	사력	몽리자	게기	계리
순화용어	사무	총괄	지각	봉안당	계좌	마을	자갈	수혜자	규정	회계처리

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규정 정비(안 제29조)

· 대상 :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 내용 : 「민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민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제외대상(「행정절차법」 제41조제3호 및 제4호)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주민복지과-61647(2018. 11. 6.)〕

성주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의 개정)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조(「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성주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 소속"을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 제안규정」 제20조"를 "「공무원 제안 규정」 제19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로 한다.

제4조(「성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의 개정) 성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5조(「성주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성주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를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로, “자연발생유원지(이하 “비지정관광지”라 한다)”를 “자연발생유원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예산회계법”을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1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를 “법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0조 제1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으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8조(「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9조(「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3호”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0조(「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친환경농업 육성법」제16조제1항”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성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의 개정) 성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성주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성주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의 개정) 성주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를 “성주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91조”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부담금”을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성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성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의 개정)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제15조(「성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의 개정) 성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성주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국제화추진협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찰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6조(「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17조(「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의 개정) 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묘지·납골당”을 “묘지·봉안당”으로 한다.

제18조(「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 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자녀장학금”으로 한다.

제3조 중 “장학금”을 “이장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군수”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통장구좌”를 “통장계좌”로 한다.

제19조(「성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의 개정) 성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를 “성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리개발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20조(「성주군반설치조례」의 개정) 성주군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반설치조례”를 “성주군 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 후단 중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한다.

제7조의1부터 제7조의3까지를 각각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로 한다.

제21조(「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회”를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22조(「성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4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2조제7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7호”로 한다.

제5조제4호가목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제23조(「성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성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력”을 “자갈”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력”을 “자갈”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사력”을 “자갈”로 한다.

제24조(「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의 개정) 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몽리자들”을 “수혜자들”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몽리자가”를 “수혜자가”로, “몽리자를”을 “수혜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몽리자”를 각각 “수혜자”로 한다.

제25조(「성주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의 개정) 성주군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를 “성주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 중 “몽리자”를 “수혜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5조”를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몽리자회의”를 “수혜자회의”로, “부락”을 “마을”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몽리자”를 각각 “수혜자”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법 제52조”를 “법 제40조”로, “몽리자”를 “수혜자”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몽리자”를 “수혜자”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게기”를 “규정”으로 한다.

제26조(「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본문 중 “구분 계리하도록”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으로 한다.

제27조(「성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개정) 성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성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로, “성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성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성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조”를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28조(「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29조(「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의 개정)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를 “성주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1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의 개정(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 9. (현행과 같음) 1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제2조(연서 주민 수)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군내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	제2조(연서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

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

○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전반에 관하여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주군 -------- ----------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군민제안"이란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 ---------- ---------- ---------- ----------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상여금 지급) ① 공무원의 경우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9조(상여금 지급) ① ---------- ----------

에 해당할 때에는 「공무원 제안규정」 제20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 「공무원 제안 규정」 제19조----------.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생 략)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를 준용하고,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경우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 ----------. - ---------- -------.

○ 「성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성주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 ---------- --------.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4. (생 략)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 ---------- ---------- ---------- ----------. 1. (현행과 같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3.·4. (현행과 같음)

○ 「성주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간, 계곡 등의 자연발생유원지(이하 "비지정관광지"라 한다)에 입장하는 행락객에게 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보존 및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자연발생유원지---------- ---------- ---------- ---------- ---------- ----------.
제3조(수수료) ①군수는 비지정관광지 중 환경보존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입장하는 행락객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 ①---------- ---------- ----------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관리) 군수는 수수료 수입의 수납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리) ----------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

○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	③----------

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5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

제3조 (의견제출)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의견제출) ----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군수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소각시설"이란 법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① ---------- ---.
1.「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3. (생 략)	제2조(정의) ----------. 1.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 2.·3. (현행과 같음)

○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친환경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 략)	제2조 (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 3. (현행과 같음)

○ 「성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성주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	제1조 (목적) --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

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맡아본다. 1.·2. (생 략)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 (기능)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성주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의 개정(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성주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제91조---------- ------- 부담금---------- ---------- ----------.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 ---------- ---------- ---------- ----------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2조(기능) ①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 수도급수조례」의 개정(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관한·법률」에·의한·수혜·대상자 5. ~ 11. (생 략)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3. (현행과 같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5.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의 개정(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성주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 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목적) ---------- ---------- ---------- ---------- ---------- ---------- 국제화추진협의회----------.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 6. (생 략)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찰한다. ② (생 략)	제4조(회장의 직무) 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② (생략)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각----------

가 1일로 계산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 ----------. ---------- ---------- 지각----------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의 개정(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 ---------- ---------- ----------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 라목	제3조(장려수당) ----------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 ---------- --- 묘지·봉안당---------- ---------- ---------- ----------.

○ 「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 ---------- ---------- ---------- 자녀장학금-------- ---------- ----------.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 --------- 이장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기별로, 대학생은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이장명의의 통장구좌로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 통장계좌---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의 개정(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	성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목적) ---------- 리개발위원회----------.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 7. (생 략)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생 략)	제5조(위원장) ①------ 사무--------.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반설치조례」의 개정(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반설치조례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 등을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획정기준) ----------. ---------- ----- 자연마을 ----------.

제7조의1 ~ 제7조의3 (생 략)	제7조의2 ~ 제7조의4 (현행 제7조의1부터 제7조의3까지와 같음)

○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	제3조(구성) ①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생 략)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하며 ----------.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의 개정(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①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에 따른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
②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2조 제7호에서 제16호까지에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은 당해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③----------「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7호----------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5조(점용허가의 기준) 군수는 공원 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준)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22조제15호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4. ---------- ---------- ------
가.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 ---------- --------- 마을---------- ---------- ----------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 「성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안 제2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자갈 ---------- ---------- ----------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생략)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	②--- 자갈 ---------- ----------

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 ---------- ---------- ----- 자갈----------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몽리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2. ---------- 수혜자들----------.
제6조(수리계의 조직) ①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몽리지역의 면적이 5헥타이상이고 몽리자가 5인 이상인 때에는 몽리자를 구성원(이하 "계원" 이라 한다)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몽리면적 5헥타 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에 미달하더라도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리계의 조직) ①---------- 수혜자가 ---------- 수혜자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의 몽리자들이 수리계와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몽리자 중에서 수리계 조직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혜자---------- 수혜자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성주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의 개정(안 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성주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제3조(위원회 설치)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몽리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업개량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설치) ---------- 수혜자 ----------.
제4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 략)	제4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의 법 제5조의 자격자 및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④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직위원 총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몽리자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 부락 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수혜자회의---------- 마을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몽리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수혜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몽리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②------ 수혜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토지의 가격 평정) ①·② (생략)	제12조(토지의 가격 평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 수혜자 ----------.
제14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①·② (생 략)	제14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 수혜자 ----------.
제19조(권리 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이전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 변동 등의 신고의무) ----------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게기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1. ---------- 규정----------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26조)

현 행	개 정 안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위탁시행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 ---------- ----------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 --. ----------.

○ 「성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개정(안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성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성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 ----------.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 3. (생 략)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6. (생 략) ② (생 략)	제2조(기능) ① 성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③ (생 략)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사무----------. ②·③ (현행과 같음)

○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2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생 략)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계좌----------.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의 개정(안 제29조)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성주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성주군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성주군청소년지도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생 략) ② (생 략)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